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허종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561호)
- 최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604호)
- 최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661호)
- 최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666호)
- 최종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769호)
- 고영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849호)
- 김성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062호)
- 기동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355호)
- 김병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637호)
- 이낙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898호)
- 최연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995호)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112호)

2021.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목 차

I . 개요	1
1. 허중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561호)	1
2. 최혜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604호)	2
3. 최혜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661호)	3
4. 최혜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666호)	4
5. 최종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769호)	6
6. 고영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849호)	7
7. 김성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062호)	8
8. 기동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355호)	10
9. 김병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637호)	11
10. 이낙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898호)	12
11. 최연숙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995호)	14
12.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112호)	15
 II . 주요 내용별 검토	 17
1. 노령연금 지급연기 신청 제한 폐지(허중식의원안)	17
2.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사업장가입자 적용(최혜영의원안 제10604호) ·	20
3. 출산크레딧 적용 확대(최혜영의원안 제10661호, 위성곤의원안)	29
4.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판단시 사용자 체납의 경우를 제외(최혜영의원안 제10666호)	41
5. 소재불명자 연금 지급정지 규정 신설(최종윤의원안)	46
6. 전자문서에 의한 독촉 근거 마련(고영인의원안)	52
7. 노령연금 소득연계 감액 일부 폐지(김성주의원안)	58

8. 연금보험료 징수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기동민의원안)	63
9. 대체복무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김병주의원안)	87
10. 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투자 의무화(이낙연의원안)	91
11.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추납 인정 확대(최연숙의원안)	100

I. 개요

1. 허종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56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허종식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1. 6. 3.
- (3) 회 부 일 : 2021. 6.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인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5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급이 연기되는 기간만큼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있어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지급연기 신청을 1회로 한정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횟수에 상관 없이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2. 최혜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60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혜영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1. 6. 4.
- (3) 회 부 일 : 2021. 6.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대한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현행법상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아져 노후소득 보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3. 최혜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66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혜영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1. 6. 7.
- (3) 회 부 일 : 2021. 6. 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자녀의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하여,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추가하고,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점이 아니라 자녀 출산 시점부터 가입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입자 등이 첫째 자녀를 출산한 때부터 12개월, 초과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시점에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등).

4. 최혜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66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혜영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1. 6. 8.
- (3) 회 부 일 : 2021. 6.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에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요건이 있는데, 이 때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장애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됨. 유족연금의 경우에도,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나, 이 때에도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음.

그런데,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의 50%(기여금)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후에 나머지 50%(부담금)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데, 이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했음에도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납부하지 아니하는 한 체납기간으로 계산되게 됨. 이는

연금보험료 체납에 책임이 없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으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의 자격을 판단할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였을 때의 기간은 체납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가입자의 장애연금 또는 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72조제1항제4호).

5. 최종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76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종윤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1. 6. 14.
- (3) 회 부 일 : 2021. 6. 1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권 변동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단의 서류·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정지기간의 연금액은 다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급권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수급권 변동 미신고나 서류·자료 제출 요구 불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고, 수급권자의 사망 또는 생존이 확인되고 나서 정지기간 동안의 급여액을 수급권자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하고 있어 제도 정비의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정지, 지급 정지의 취소, 미지급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제86조의2 신설).

6. 고영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84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고영인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1. 6. 17.
- (3) 회 부 일 : 2021. 6.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의 고지 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의 경우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음.

특히 최근 디지털 환경의 변화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전자시스템에 대한 활용력이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송달에 따르는 비용과 취급 측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5조).

7. 김성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06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성주의원 등 16인
- (2) 제 안 일 : 2021. 6. 24.
- (3) 회 부 일 : 2021. 6.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의 노령연금액에서 소득수준별로 일정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고소득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월평균 노령연금액이 2020년 말 기준 54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노후소득보장 상황과 현재 60대가 부모와 성인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생계를 목적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특히 노령연금 감액 현황을 보면 월평균소득금액 대비 초과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는 41,762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감액자(86,031명)의 절반에 달하는데, 실제 이들의 월소득은 253만원부터 353만원까지로 이들을 고소득자로 보기에 무리가 있음.

이에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의 노령연금 감액 규정을

제외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3조의2).

8. 기동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35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기동민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1. 7. 6.
- (3) 회 부 일 : 2021. 7.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금보험료의 징수 및 징수금과 관련한 고지·독촉·채납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모두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료 징수체계를 보다 효율적·전문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징수방법·절차 등은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비롯한 사회보험료 징수·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제17조의2제2항·제54조·제57조제3항·제57조의2·제87조·제88조·제102조의2·제108조·제109조·제115조·제128조, 제88조의2·제89조·제90조·제90조의3·제92조·제94조·제95조, 제95조의2부터 제95조의4까지, 제96조·제97조·제97조의2·제98조·제99조 삭제 등).

9. 김병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63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병주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1. 7. 22.
- (3) 회 부 일 : 2021.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법」 제18조에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에는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되어있으며 그 대상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되어 있음.

춘천지방법원에서 2008년 5월에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 처벌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였고, 2018년 6월에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것을 헌법불합치 판결로 처리하여 대체복무제가 신설되고 이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4월 13일에 시행됨.

대체역 신설에 따라 「국민연금법」 18조가 개정되어 대체복무요원도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에는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해야 하나 누락되어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에 대체복무요원을 포함하기 위한 법안임(안 제18조제1항제5호 신설).

10. 이낙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89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낙연의원 등 25인
- (2) 제 안 일 : 2021. 8. 4.
- (3) 회 부 일 : 2021. 8.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을 증권·채권의 매매나 대여를 통해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이른바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책임투자를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고, 적용범위를 증권·채권의 매매나 대여를 통한 관리·운용 방법에만 국한시키는 한편, 목적을 안정적인 수익 증대로 귀결시키고 있어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증권·채권의 매매 및 대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기준 및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 목적을 수익 증대가 아닌 기금의 지속가능

성 확보로 규정함으로써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2조,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등).

11. 최연숙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99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연숙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1. 8. 11.
- (3) 회 부 일 : 2021. 8.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의 사유가 있으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상응하는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면 해당 기간을 가입 기간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된 후,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지 아니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8세 미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제1호 신설).

12.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11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1. 8. 19.
- (3) 회 부 일 : 2021. 8.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와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노령연금수급권 발생 시점에 가입기간의 추가산입이 이루어지는 등 수혜의 체감도가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부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등 적용 범위 및 한도 등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하여 그 재원은 국가가 모두 부담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출산 신고 하는 때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그 재원은 국가가 전

부 부담하도록 개편함으로써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노령연금 지급연기 신청 제한 폐지(허종식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의 노령연금 지급연기 신청 횟수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①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① ----- ----- ----- ----- ----- --경우에는--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현행 1회로 제한된 노령연금 수급연기 신청 가능 횟수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수급권자 개인의 선택권을 더 넓게 보장해주고자 하는 것임.
- 현행 제도는 1회의 고정기간에 대한 수급연기 신청과 재지급 신청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예를 들어 기간 연장을 짧게 여러 차례 사용하거나, 재지급 신청 후 다시 수급연기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등 선택권 확대를 가져오게 될 것임.
- 수급권자 개인의 경제 사정은 불확실하며 언제든 변화할 수 있으므로, 상황 변화에 따라 최적의 수급 조건을 스스로가 결정하게 하는 개정안은 수급권자에게는 긍정적 실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아래 표와 같이 최근 5년간 추세로 보면 연평균 2만 1천명이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를 신청하고, 1만 3천명이 노령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고 있음.

< 연도별 노령연금 수급자 중 연기신청자 현황 >

(단위: 명)

구 분	2016 (‘52~‘55년생)	2017 (‘53~‘56년생)	2018* (‘54~‘56년생)	2019 (‘54~‘57년생)	2020 (‘55~‘58년생)	평균 (2018년 제외)
연기신청 가능 노령연금 수급자** (A)	1,122,795	1,201,810	(965,032)	1,441,631	1,254,941	1,255,294
연기신청자*** (B)	20,132	22,464	(5,174)	20,417	22,121	21,284
연기신청 비율 (B/A)	1.79%	1.87%	(0.54%)	1.42%	1.76%	1.70%

* 2018년은 출생연도별 지급연령이 상향조정된 해로 신규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아, 연기신청자 수 및 연기신청 비율이 낮음

** (연기신청 가능 노령연금 수급자) 출생연도별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

*** (연기신청자) 해당연도 말 누적 연기신청자에서 전년도 말 누적 연기신청자를 뺀 인원

< 연도별 추가 연기신청 가능자 현황 >

(기준: 해당연도 말, 해당연도 재지급일), (단위: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2018년 제외)
재지급 (A=B+C)	5,507	10,854	(9,258)	14,504	21,486	13,088
5년 미만 연기 후 재지급 (B) (추가 연기신청 가능)	4,658	7,864	(9,258)	10,200	14,838	9,390
5년 연기 후 재지급** (C) (추가 연기신청 불가능)	849	2,990	-	4,304	6,648	3,698
재지급자 중 추가 연기신청 가능자 비율 (B/A)	84.6%	72.5%	(100%)	70.3%	69.1%	71.7%

* 2018년은 출생연도별 지급연령이 상향조정된 해로, 최대 5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음

** 최대 연기가능 기간은 5년이므로, 5년 연기한 자는 추가 연기를 신청할 수 없음

다. 보건복지부 의견: 수용

- ☐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는 최대 5년까지만 신청하도록 제한한 점,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확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필요

2.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사업장가입자 적용 (최혜영의원안 제10604호)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간주함으로써 사업장가입자로 편입시키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 여기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¹⁾

를 가진 비정규·비전형 근로자를 말함.

- 2020년말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약 60만명(산재 입직자료 기준) 중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54.8만 명이고, 이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44만 명(80.3%)이며, 가입자 중 10.1만 명(18.5%)은 사업장가입자, 29.9만 명(54.5%)은 지역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남.²⁾

< 산재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

(각 연도별 12월 말 기준, 단위 : 만 명, %)

구분	산재 적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¹⁾	가입대상							가입 대상 아님 ⁵⁾
		계	가입자					미가입 ⁴⁾	
			계 (소득신고 +납부예외)	소득신고			납 부 예 외 ³⁾		
				계	사업장 ²⁾	지역			
'20	60.0	54.8 (100.0)	44.0 (80.3)	40.0 (73.0)	10.1 (18.5)	29.9 (54.5)	4.0 (7.3)	10.8 (19.7)	5.2
'19	46.0	42.3 (100.0)	34.0 (80.4)	30.6 (72.5)	8.0 (19.0)	22.6 (53.5)	3.4 (7.9)	8.3 (19.6)	3.7
'18	44.2	41.4 (100.0)	33.1 (80.0)	29.7 (71.6)	7.5 (18.1)	22.2 (53.5)	3.5 (8.4)	8.3 (20.0)	2.7
'17	44.3	41.9 (100.0)	32.7 (78.1)	28.6 (68.4)	7.2 (17.2)	21.4 (51.2)	4.1 (9.7)	9.2 (21.9)	2.3
'16	43.5	42.0 (100.0)	32.6 (77.7)	27.9 (66.6)	6.6 (15.8)	21.3 (50.8)	4.7 (11.1)	9.4 (22.3)	1.5

주: 1) 산재보험 입직신고 자료 기준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대상이 아닌 지역가입대상인 바, 근로복지공단
에 가입된 사업장과는 다른 사업장으로 가입된 경우가 대부분임

3) 일시적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납부 면제 제도

4) 공적자료(국세청, 고용노동부 통계) 상으로는 가입대상에 해당하나, 실제 소득발생여부 등이
확인이 되지 않아 소득신고자 혹은 납부예외자로 분류되기 전인 자

5) 타직역, 기초수급자, 18세 미만, 60세 이상 등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

-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하면 최근 플랫폼 경제의 발전을 계기로 근로자
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2021년 1월 「산업재해

1) 통계청,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 단, 이는 특수형태근로자 외 다른 직종의 소득으로 가입된 경우도 포함된 통계임에 유의

보상보험법」 등 개정을 통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두 사회보험의 적용을 확대하는 제도개편이 있었고, 이에 따라 현재 산재보험은 15개, 고용보험은 12개 특고 업종에 대해서 가입이 인정되게 되었음.³⁾

이러한 제도개편의 연장선상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0606, 최혜연의원 대표발의)」이 동시에 발의된 것임.

□ 이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는 방향으로 사회보험의 제도개편을 하겠다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관한 선행된 입법과 일관된 방향인 것으로 보임.

□ 다만, 2021년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확대의 조치가 시행된 상황에서 연속으로 사용자에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이 동시에 부과되도록 하는 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 여건 및 해당 산업에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전 본인이 원하면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률이 15.8%에 불과하였던 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에 따른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임.

3) 특고 업종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현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11개)	산재보험만 적용(4)	고용보험만 적용(1)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자,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 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운전자	골프장 캐디, 소프트웨어기술사(고용보험 적용 미정),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22년 고용보험 적용)	방과후 강사(코로나19 관련 특별 포함)

※ 2021년 7월부터 소프트웨어기술사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됨.

-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가입이 배제되어 있었던 고용보험의 경우와 다르게, 국민연금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이미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제도에 포섭되어 있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개정안은 “산재보험”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정의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 기관 의견

(1) 보건복지부: 신중 검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에 따른 사용자 단체의 반대가 예상되므로 사용자 단체와의 협의 등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

* 사용자 부담금 연 최대 6,822억원(특고종사자 최대 56만명 적용 예상, '21.3. 기준)
-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 범위*를 검토하겠음.

* 산재보험은 15개 특고 직종, 고용보험은 12개 특고 직종에 대해서 적용
-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가입추진을 위해 실시간 소득자료 공유* 등 관련 부처(국세청 및 기재부)와의 협의를 함께 진행되어야 함

* (고용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편입에 따라 공유('21.7월~)

(2) 경영자 단체

□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율(1.465%)⁴⁾을 상회하는 4.5%의 보험료율에 따라 사용자의 연간 약 7,750억원⁵⁾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현재의 낮은 가입률은 소득노출 기피를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고 지역가입자로서 가입자격이 있으므로 종전의 고용·산재보험과 같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지역가입자 및 기존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업종별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출되었음.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설계사는 업무수행 자율성이 보장되고 소득구조가 실적에 비례하며, 보험사 · 대리점간 진출입이 자유로운 개인사업자 직종으로서,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보험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고령자 등 취약한 보험설계사 중심의 구조조정이 우려됨.

□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모집인은 업무수행 자율성이 보장되는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로 취급하기에 부적합하고, 신용카드사가 현재의 산재보험(연간 54억원) 및 고용보험(연간 103억원) 부담에 비해서도 과도한 비용 부담(연간 661억원 추산)⁶⁾을 하게 되며, 감소 추세에 있는 카드모집인 일자리 축소가 가속화될 것이 우려됨.

4) 고용보험료율(0.7%) + 2021년 평균 산재보험료율(0.765%) = 1.465%

5) 인원수는 '20.12월 등록종사자 기준, 1인당 보수총액 기준은 '21.6월 고용부 고시를 활용하여 추산하였으며, 현재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모두 포함할 경우 사업주의 실제 추가 보험료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

6) 산출 기준(여신금융협회)

- 대상인원 : 70,513명('20년말 기준 등록 모집인 기준)
- 월소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실태조사사업, 고용노동부(2017), P.39, 월평균 순소득 수준 참조(전업 248만원, 제휴 162만원)
- 하한액, 상한액, 경비율 등 세부적용요건은 감안하지 않음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 특고 종사자는 고가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를 포함하는 등 범위가 광범위하고,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및 영업의 성질상 고용보험·산재보험과 다르게 국민연금의 소득과액 및 보험료 산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건설업의 하도급 구조 특성상 중·소기업에 부담이 전가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됨.

□ (대중골프장협회) 캐디는 업무의 특성상 근로자성이 부족하고, 골프장별로 연간 약 1억 1,600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 부담⁷⁾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며, 캐디는 골프장의 필수 인력이 아니며 최근 노캐디(No caddie) 운영이 확산되는 추세로서 캐디 고용 감소가 우려됨.

7) 산출 기준(대중골프장협회)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액 기준
- 18홀 기준 사업장당 약 80명 근무 가정

【참고】	산재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국민연금 가입현황(2020년 12월)
------	--

(’20.12월 말 기준, 단위 : 명, %)

구분	산재 적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총계	가입대상							적용 제외자 ³⁾
		계	가입자					미가입 ²⁾	
			계 (소득신고+납부 예외)	소득신고 ¹⁾			납부 예외		
				계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계	599,861	547,675 (100.0)	439,939 (80.3)	399,992 (73.0)	101,381 (18.5)	298,611 (54.5)	39,947 (7.3)	107,736 (19.7)	52,186
보험설계사	336,136	298,370	247,690	233,205	69,376	163,829	14,485	50,680	37,766
건설기계 운전사	5,709	3,555	3,261	3,223	501	2,722	38	294	2,154
학습지강 사, 교구 방문강사 ⁴⁾	47,845	45,654	35,528	32,919	5,853	27,066	2,609	10,126	2,191
골프장캐디	32,614	31,161	20,527	10,841	2,555	8,286	9,686	10,634	1,453
택배기사	34,080	32,447	28,427	26,718	2,280	24,438	1,709	4,020	1,633
퀵서비스 기사	25,350	23,686	16,198	9,986	4,631	5,355	6,212	7,488	1,664
대출모집인	7,618	7,220	6,099	5,685	2,245	3,440	414	1,121	398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12,463	10,569	8,669	8,217	2,308	5,909	452	1,900	1,894
대리운전 기사	13	12	11	9	6	3	2	1	1
방문판매원 ⁵⁾	57,478	55,301	42,323	40,141	8,976	31,165	2,182	12,978	2,177
방문점검원 ⁵⁾	23,197	22,541	15,369	13,670	1,692	11,978	1,699	7,172	656
가전제품 설치기사 ⁵⁾	2,456	2,430	2,168	2,070	185	1,885	98	262	26
화물차주 ⁵⁾	14,902	14,729	13,669	13,308	773	12,535	361	1,060	173

1) 반드시 해당 직종에서 취득·적용된 것은 아니며, 다른 직종에서 가입된 경우도 포함

2) 공적자료(국세청, 고용노동부 통계)상으로 가입대상에 해당하나, 실제 소득발생여부 등이 확인이 되지 않아 소득신고자 혹은 납부예외자로 분류되기 전인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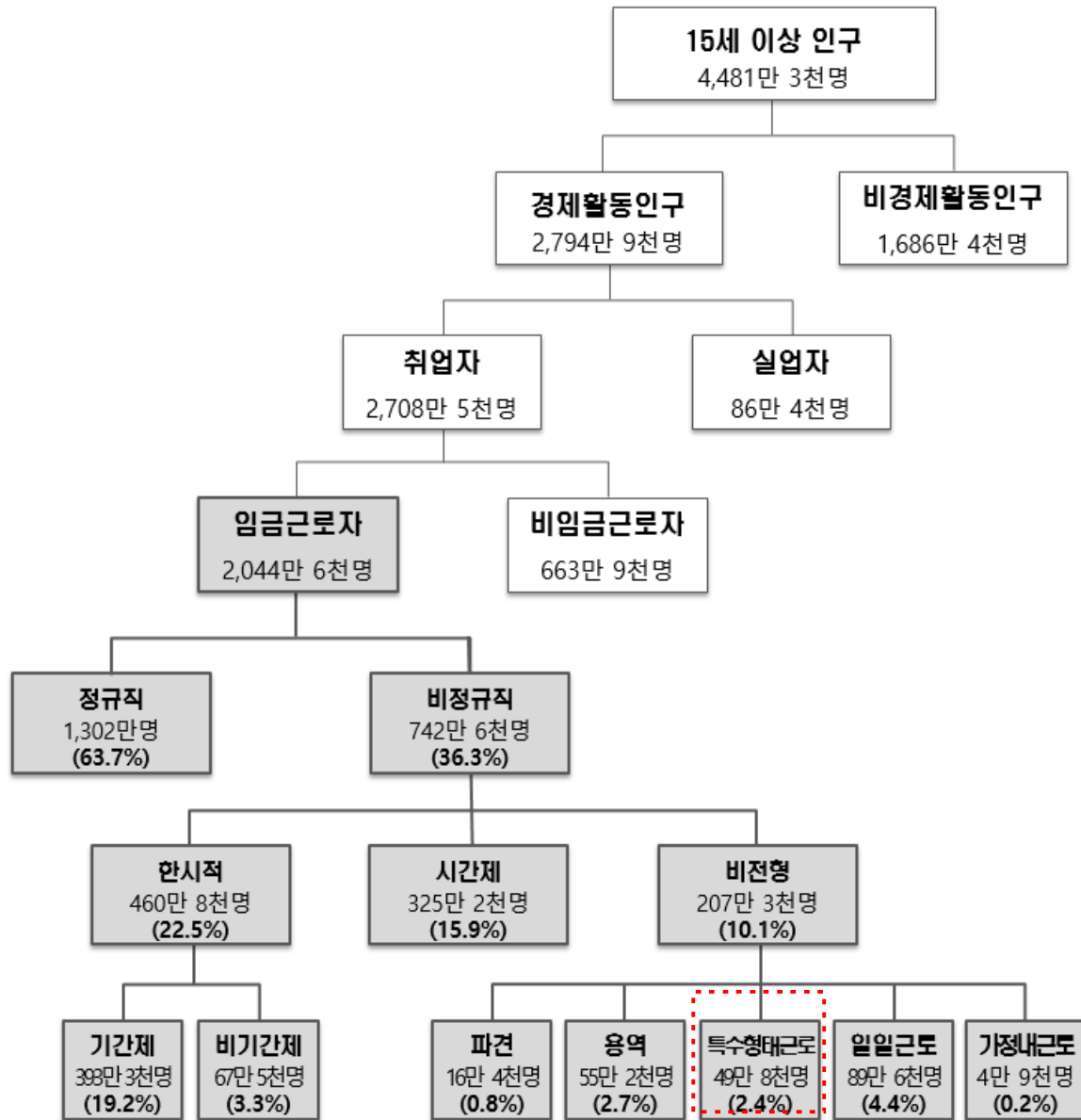
3) 타직역, 기초수급자, 18세 미만, 60세 이상 등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

4) 학습지 방문강사에 교육 교구 방문강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개편(’20.7.1.)

5)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추가(’20.7.1.)

※ 소프트웨어 기술사는 ’21.7.1. 시행되었으며 통계 추가 예정

【참고】 근로형태별 근로자 구성(2020년 8월)



- 주: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규모는 비정규직 유형별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그 합계와 불일치함
 2) 안은 임금근로자 대비 차지하는 비율임
 3) 참고로 통계청 기준 특수형태근로자는 임금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조사한 결과로서, 비임금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므로 과소추계되었다는 논의도 있음.
 예)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추산 230만명, 2019년 한국노동연구원 추산 166만명

출처: 통계청,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참고】	비정규직 근로자 구분
-------------	--------------------

■ 비정규직 근로자	①한시적 근로자 ②시간제 근로자 ③비전형 근로자로 구성
○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비기간제 근로자를 말함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
- 비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일의 완료, 이전 근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
○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 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를 말함
- 파견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 용역 근로자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 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 가정 내 근로자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
- 일일(단기) 근로자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출처: 통계청,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3. 출산크레딧 적용 확대(최혜영의원안 제10661호, 위성곤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자녀 출생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을 현행의 둘째 자녀부터 적용을 개편하여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현재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주던 것을 출생 시점부터 인정하도록 하며, 정부가 이러한 가입기간 추가 인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 위성곤의원안은 여기에 더하여 “출산크레딧” 명칭을 “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고, 가입기간 추가인정의 상한 50개월을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첫째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출산크레딧의 기간은 위성곤의원안은 24개월인 반면 최혜영의원안은 12개월이며, 이후 둘째 자녀부터 가산되는 인정 가입기간 개월 수는 18개월씩으로 동일함.

현 행	위성곤의원안	최혜영 의원안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u>2 이상의 자녀가</u>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u>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u>	제19조(양육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u>자녀가</u> ----- ----- ----- ---출산 신고하는 때에--- -----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u>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출산한 때(「민법」에 따라 친생자·혼인외 출생자로 인지되거나</u>

현행	위성곤의원안	최혜영 의원안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을 가입기간에 추 가로 산입한다. 다 만, 추가로 산입하 는 기간은 50개월 을 초과할 수 없으 며, 자녀 수의 인 정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 ----- ----- ----- ----. 다만,----- ----- ----- ----- ----- ----- ----- ----- -----	나, 양자·친양자로 입양된 때와 「입 양특례법」에 따라 자녀가 입양된 때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 기간에 각각 추가 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 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1. -----1명인-- -----24개월	1. 첫째 자녀를 출 산한 때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 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 에 2자녀를 초과 하는 자녀 1명마	2. -----2명----- -----자녀----- ----- ----- ----- -----	2. 둘째 자녀 이상 을 출산한 때 : 첫째 자녀에 대하 여 인정되는 12개 월에 1자녀를 초 과하는 자녀 1명

현행	위성곤의원안	최혜영 의원안
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신 설>	-----18개월	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인정소득”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③ ----- ----- ----- -----전부를-----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출산한 때부터 제1항 각 호의 기간 동안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현행	위성곤의원안	최혜영 의원안
<신설>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생략) 2. 가입자 개인의	④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기본연금액) ①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현행	위성곤의원안	최혜영 의원안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 전년도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삭제>

현행	위성곤의원안	최혜영의원안
<u>제1호에 따라</u> <u>산정한 금액</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현황

- 출산크레딧 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음.
- 현행법상 출산크레딧의 적용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이며, 출산한 자녀의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음.

2007. 12. 31. 이전에 자녀가 없거나 한 명인 가입자가 2008. 1. 1.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가입기간 12개월을,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하여는 각 1명마다 18개월을 각각 추가해주고 있으며, 최대한도는 50개월까지임.

< 출생 자녀 수에 따른 크레딧 인정기간 >

자녀 수	2명	3명	4명	5명 이상
추가 산입기간	12개월	30개월(+18개월)	48개월(+18개월)	50개월(+2개월)

* 주: '08. 1. 1. 이후에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둘째 자녀에는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에는 1명당 18개월 추가 인정

* 자료: 보건복지부

- 출산크레딧을 통한 가입기간 추가산입은 부모가 합의한 경우에는 부모 중 한쪽에 대해 산입해주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균분하여 부모 양쪽에 대해 산입해주는 방식을 채택함.
- 출산크레딧으로 추가산입된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해당되는 A값⁸⁾으로 설정하고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

8)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연금액을 말함.

균소득만큼을 추가산입된 가입기간상의 소득으로 인정해 줌.

다. 검토의견

□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의안인 남인순의원안(2101362), 김성주의원안(2102202)이 우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같이 심사될 필요가 있음.

□ 남인순의원안(2101362), 김성주의원안(2102202)은 첫째부터 출산크레딧을 적용하는 점에서는 개정안과 동일하지만,

둘째 출생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추가 가입기간은 김성주의원안은 18개월, 남인순의원안은 24개월이나, 최혜영의원안은 30개월, 위성곤의원안은 42개월로서 차이가 있음.

특히 위성곤의원안은 추가 가입기간의 50개월 한도를 폐지하였으므로 넷째 출생 이후로도 계속 가입기간 인정이 18개월씩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음.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 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에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에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에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다음으로 출산크레딧의 명칭을 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위성곤의원안의 내용은 남인순의원안과 동일함.

< 개정안 및 관련 법률안 대조표 >

구분			현행	위성곤 의원안	최혜영 의원안	남인순 의원안	김성주 의원안
크레딧 확대	첫째 적용		×	○			
	인정 한도		50개월	한도 폐지	50개월		
	가입 기간 인정 (개월)	첫째	-	24	12	12	6
		둘째	12	42(+18)	30(+18)	24(+12)	18(+12)
		셋째	30(+18)	60(+18)	48(+18)	36(+12)	36(+18)
		넷째	48(+18)	78(+18)	50(+2)	48(+12)	50(+14)
		다섯 째	50(+2)	96(+18)	50(+0)	50(+2)	50(+0)
명칭	출산크레딧 →양육크레딧		×	○	×	○	×
재정 부담 주체			국가 일부부담	국가 전액부담		국가 일부부담	
산입 시점			수급권 취득시	출생시		수급권 취득시	

- 개정안(위성곤의원안 및 최혜영의원안)이 현재 계류된 남인순의원안 및 김성주의원안과 구별되는 점은,

첫째, 출산크레딧 제도로 인한 비용을 국민연금기금이 부담하지 않고 전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둘째, 출생으로 인한 추가 가입기간 인정을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시가 아니라 출생시부터로 앞당긴다는 점임.

- 출산크레딧의 적용대상을 첫째 자녀로까지 확대하여 출산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는 것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주어 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음.
- 또한 2020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⁹⁾은 0.84까지 떨어졌고, 2020년 기준 조혼인율¹⁰⁾은 역대 최저인 4.2를 기록하여 비혼이 늘어나며, 특히 결혼 5년차 시점 무자녀인 부부 비율도 17.5%(2019년 기준)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첫째 자녀 출생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저출산을 극복하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첫째 출산부터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각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와 비교하여 향후 67년간 각각 36조원(김성주의원안), 64조원(남인순의원안), 97조원(최혜영의원안), 170조원(위성곤의원안)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최근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시점 연장을 위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 재정소요는 그만큼 고갈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산크레딧의 적용 확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9) 한 여자가 가입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10) 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

< 관련 법률안별 추가재정소요 검토 >

(단위: 명, 가구, %)

구분	출산 자녀 수					2022~2088년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총 소요	추가 소요
현 행	-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101조	-
추가 효과	-	27,610원	69,040원	110,470원	115,080원		
김성주 의원안	6개월	18개월	36개월	50개월	50개월	136조	36조
추가 효과	13,800원	41,420원	82,850원	115,080원	115,080원		
남인순 의원안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50개월	166조	64조
추가 효과	27,610원	55,230원	82,850원	110,470원	115,080원		
최혜영 의원안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50개월	197조	97조
추가 효과	27,610원	69,040원	110,470원	115,080원	115,080원		
위성곤 의원안	24개월	42개월	60개월	78개월	1명당 + 18개월 (한도 없음)	271조	170조
추가 효과	55,230원	96,660원	138,090원	179,520원	220,950원		

주: 최혜영 의원안과 위성곤 의원안의 추가 가입기간 산입 시점 변경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음.

- 추가로 개정안(최혜영의원안 및 위성곤의원안)은 종전에 발의된 법률안과 다르게 추가 가입기간 인정의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시에서 출산 시로 당기고 있음.
- 이 경우 미래에 발생하게 될 출산크레딧을 위한 비용 발생이 현재로 앞당겨져서 발생함에 따라, 종래 연금고갈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던 출산크레딧 재정 부담분까지 연금고갈 이전 시점으로 앞당겨지게 되고, 이에 따라 연금고갈의 시점을 앞당기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이러한 가입기간의 조기 인정에 따른 현재 시점의 추가 재정 소요액을 국회예산정책처는 연평균 9,898억원, 국민연금공단 연구원은 연평균 1조 9,241억원으로 추계하였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라. 보건복지부 의견: 신중 검토

- 출산 친화 여건 조성 및 연금수급기회 확대를 위한 개정안 취지에 공감
- 다만, 출산크레딧 확대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첫째 자녀 6개월 지원)과 함께 통합적 검토 필요
- 또한 사전 지원방식 전환의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혜 체감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단기적 재정소요가 크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가. 개정안의 내용

- | 현행 | 개정안 |
|---|--|
|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
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
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
결정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

-----.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2. -----
----- |
| 가. (생략) | 가. (현행과 같음) |
| 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 | 나. -----
----- |

현행	개정안
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u>채납기간</u>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생략) ② ~ ④ (생략)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 3. (생략)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u>채납기간</u>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 ----- --. ----- --<u>채납기간(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은 채납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u>----- -----. 다.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u>채납기간(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은 채납</u>

현행	개정안
5. (생략) ② (생략)	<u>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u>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질병·부상의 초진일 및 사망일로부터 5년전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이 3년이 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사업장가입자로서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여서 체납기간이 3년이 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었는데도 부당하게 수급자격을 박탈당하는 문제가 있었음.

- 개정안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자격에서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에 대하여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개정안과 같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의 수급권 인정에 지장이 없도록 구제 조항을 두는 경우에는 특히 장애인 근로자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체납 증가의 부작용이 우려되며,

다른 가입자에 비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수급권 인정이 더 용이해짐에

다른 형평성 문제 제기가 있을 수도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2021년 6월 8일 「국민연금법」 제17조 개정¹¹⁾을 통하여 근로자가 기여금과 부담금까지 납부하면 사용자가 체납한 기간의 전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추후에 체납보험료를 사용자에게서 징수하면 근로자에게 이자까지 포함하여 초과하여 낸 부담금을 환불하는 구제방안이 마련되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다. 보건복지부 의견: 신중 검토

- 사업장가입자의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공감하나,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최근 체납

11) 「국민연금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 (생략)

②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滯納月)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는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 및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1. 기여금 납부: 체납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2. 기여금과 부담금 납부: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할 때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⑤ 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가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 및 부담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1. 6. 8.>

⑥ 제77조에 따라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이 제57조제1항에 따라 환수할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21. 6. 8.>

[시행일 : 2021. 12. 9.] 제17조

보험료 납부기회를 확대(2021.6.8. 법률 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 필요

5. 소재불명자 연금 지급정지 규정 신설(최종윤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의 일시적 지급 정지, 정지 취소 및 미지급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안 제86조의2의 항별로 보면,

- ①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 불명인 경우 급여 지급을 정지하고,
- ② 추후 소재가 확인되거나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실종선고에 따른 사망의 의제도 포함) 지급정지를 취소하며,
- ③ 소재확인으로 지급정지 취소 시 해당 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 급여와 동 법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모두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고, 다만, 제7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¹²⁾에 따라 소재불명의 수

12) 「국민연금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3. 5. (생 략)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제75조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개정 2017.10.24.>) ① (생 략)

②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때에는 유족인 자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 불명(부명)의 기간동안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③ 배우자 외의 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수급권자 중에서 1년 이상 소재를 알 수 없는 자가 있으면 다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재 불명의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급권자를 대신하여 다른 유족에게 기 지급된 유족연금액은 이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며,

- ④ 안 제86조의2 제1항부터 제3항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현행	개정안
<신설>	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①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한 후 소재불명이었던 수급권자의 소재가 확인되거나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 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 정지를 취소한 경우 지급 정지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수급권자(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55조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유족연금이 정지된 후 제7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른 유족에게 지급된 유족연금액은 그 기간 동안 소재를 알 수 없던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정지, 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취소, 제3항에 따른 미지급 급여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86조에서는 수급권자가 수급권 변동 미신고나 서류·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급여 지급을 일시 중지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³⁾
- 그런데 현재 수급권자의 소재불명 시 급여 중단에 대해서 현행법 제86조를 적용하고 있으나, 수급권자의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미신고 등을 포함해서 제86조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으며, 수급권자의 소재가 확인되고 난 후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규정이 없는 상태임.
-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소재불명자의 수급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수급권자의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하다는 질의가 있었음.¹⁴⁾

13) 「국민연금법」 제86조(지급의 정지 등) ①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2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서류, 그 밖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 3. (생략)
 4.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4) 2019년도국감-보건복지(2019년10월10일)

○최도자 위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소재 불명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수급권자의 수가 1858명에 이릅니다. 매년 200명이 넘게 지급정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연금법상에는 연금 수급권을 가진 자가 가출이나 그리고 실종, 거주등록 소재가 불명이면 연금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소재 불명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수급권자의 내역변경 신고사항 중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로 간주하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불명의 확인 방법과 확인된 경우의 처리는 국민연금법 제122조,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997년에 만들어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것인데요. 이렇게 명문 규정 없이 국민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급여를 받을 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공무원연금법에는 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그렇습니다.

○최도자 위원 잊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 국민연금 수급자 중 소재불명이 되는 사람은 연평균 약 3,000명이나, 그 중 확인 절차 이후에도 소재불명자로 인정되어 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되는 경우는 연평균 약 500명인 것으로 나타남.

일시중지 처리된 사람은 3년 간의 일시 중지 기간 중에 대부분 일시중지가 해제되나, 이를 경과하여 지급정지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는 2017년 이후 88건임.

< 국민연금 수급자 소재불명, 일시중지 및 지급정지 발생 현황 >

(단위: 건)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6월
소재불명 발생	13,515	2,982	3,238	3,042	2,825	1,428
지급정지	88	65	23	0	0	0
지급정지취소	8	7	1	0	0	0
일시중지	2,197	532	471	582	414	198
일시중지해제	1,866	473	426	466	348	153

주: 연도별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말소) 사유발생일, 지급정지 및 취소, 일시중지 및 해제사유발생일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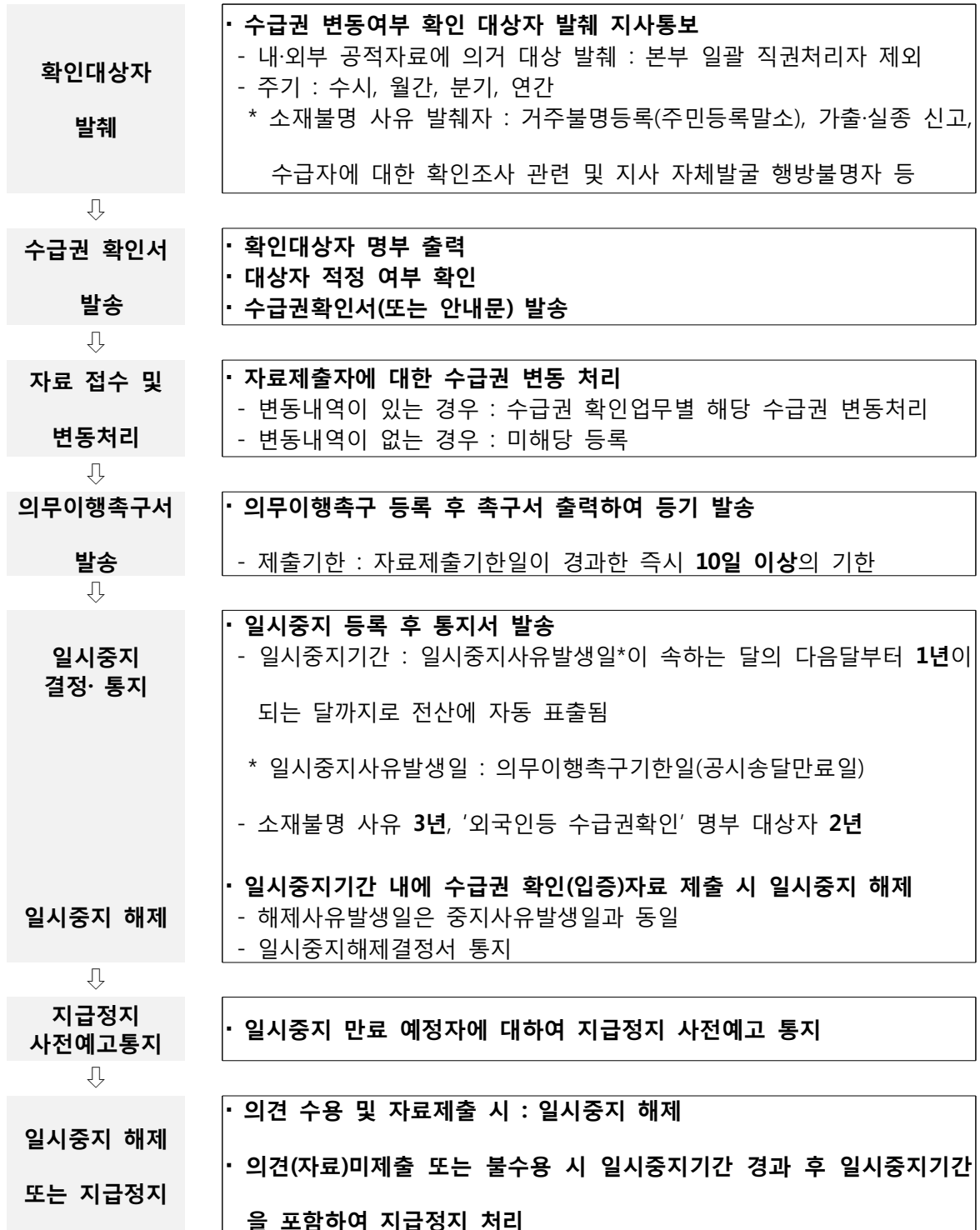
□ 개정안은 소재불명자 처리의 절차를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소재불명에 의한 연금 지급의 일시중지·정지 및 추후의 지급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연금 수급권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로 이를 직접 규정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최도자 위원 그래서 국민연금법에도 이러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사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이 문제도 약간 양면성이 좀 있어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은 했기 때문에 관련된 별도 법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도자 위원 소재불명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3조 2항의 규정에도 부합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보건복지부 의견 : 수용

- ☐ 소재 불명이 확인된 수급권자에 대한 연금 지급정지의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 필요

【참고】 소재불명자 등 수급권 확인 및 지급정지 절차



자료: 국민연금공단

6. 전자문서에 의한 독촉 근거 마련(고영인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연체금·체납처분비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독촉을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② (생략)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 교환방식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독촉에 대한 신청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u><신설></u>	④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독촉의 도달시기에 관하여는 제88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지”는 “독촉”으로 본다.
③·④ (생략)	⑤·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	⑦ -----제6항에--

현행	개정안
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 보험료 등의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매각은 건강보험공단이 한 것	----- ----- ----- ----- ----- ----- ----- ----- ----- ----- -----. ⑧ -----제6항에----- ----- ----- ----- ----- ----- ----- ----- ----- ----- ----- ----- ----- ----- ----- -----.

현행	개정안
으로 본다.	-----.
⑦ 건강보험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 ----- ----- -----.

나. 검토의견

- 디지털 전환의 고도화 추세에 따라 전자문서의 활용은 공적·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일상적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전자문서의 효력은 종이 문서와 동일하다는 점이 보장되어 있음.¹⁵⁾
- 개정안은 이러한 전자문서 활용의 증대 경향에 맞추어 현재 납부의 고지에만 적용되고 있는 전자문서 활용을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연체금·체납처분비에 대한 독촉에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전자문서 이용에 따른 편의 증진 및 종이 사용의 감축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서 연평균 약 2천 200만건의 독촉이 이루어지는데, 전자적 납입고지가 이루어지는 비율을 고려하면 약 16.2%에 해당하는 368만건에 대해 전자 독촉이 활용되어 연간 약 11억 8천만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됨.¹⁶⁾

1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 ③ (생략)

16) 전자적 납입고지에 동의한 자는 모두 전자적 독촉도 동시에 동의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2021

□ 관련 제도로써 독촉 등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송달¹⁷⁾과 「국세기본법」상 독촉 등 국세 서류의 송달¹⁸⁾에 대해서도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참고로 2021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제90조제4항 및 제5항¹⁹⁾을 신설하여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고 시행 예정에 있음.

□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50, 김영인 의원 대표발의)」도 건강보험에 대해서 동일한 취지의 전자문서에 의한 독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 시 이를

년 7월 기준 사업장가입자 전자고지 비율 39.6%, 지역가입자 전자고지 비율 11.6%와 최근 5년간 평균 사업장가입자 독촉 건수(3,773,384) 및 지역가입자 독촉 건수(18,877,758), 종이고지(450원)와 전자고지(130원)의 원가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 결과
 $3,684,080\text{건} = 3,773,384 \times 0.396 + 18,877,758 \times 0.116$
 $1,178,905,600\text{원} = 3,684,080\text{건} \times (450\text{원} - 130\text{원})$

17)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1.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2.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인 경우
3. (생략)
- ② ~ ⑤ (생략)

18)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 ② ~ ⑦ (생략)
-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9) 「국민연금법」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개정 2009.5.21.>) ④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체납 사실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추가로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시행일 2022.1.28.]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보건복지부 의견: 수용

- ☐ 개인의 신청에 따라 정기고지 외에 독촉고지도 전자로 받아볼 수 있게 하여 전자고지 신청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보임.

* (현행) 법적 근거 부재로 전자고지 신청하여도 독촉고지는 우편으로 발송

- ☐ 또한, 전자고지로 전환함에 따라 고지비용의 절감 효과 기대

* (종이고지) 건당 450원 → (전자고지) 건당 130원

- ☐ 독촉 고지의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이므로, 안 제95조제3항의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을 “건강보험공단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 전자고지 및 독촉 현황
-------------	---------------------------------

□ 국민연금 보험료 정기고지 현황 (종이/전자 구분, 최근 5년)

○ 사업장

(단위: 건)

연도	계	종이고지 건수	전자고지 건수	전자고지 비율(%)
2021.7월	12,811,885	7,736,070	5,075,815	39.6
2020	21,359,623	13,210,334	8,149,289	38.2
2019	20,718,803	13,295,363	7,423,440	35.8
2018	19,811,122	13,087,575	6,723,547	33.9
2017	19,018,251	13,510,592	5,507,659	29.0
2016	17,981,683	13,208,815	4,772,868	26.5

○ 지역가입자

(단위: 건)

연도	계	종이고지 건수	전자고지 건수	전자고지 비율(%)
2021.7월	32,290,500	28,551,697	3,738,803	11.6
2020	55,835,568	49,723,785	6,111,783	10.9
2019	56,485,614	50,605,578	5,880,036	10.4
2018	55,653,686	50,477,341	5,176,345	9.3
2017	54,026,556	49,047,615	4,978,941	9.2
2016	51,809,865	46,858,447	4,951,418	9.6

□ 국민연금 보험료 독촉고지 현황 (최근 5년간)

(단위: 건)

연도	계	사업장	지역가입자
2021.7월	12,366,821	2,200,327	10,166,494
2020	22,350,616	3,981,586	18,369,030
2019	23,252,372	4,105,369	19,147,003
2018	22,704,925	3,914,753	18,790,172
2017	22,494,231	3,508,754	18,985,477
2016	22,453,571	3,356,460	19,097,111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가. 개정안의 내용

- ☐ 개정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A값(전체가입자의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2021년 기준 253만원)을 100만원 미만 초과하게 되는 60세 이상 65세 미만 수급권자에 대한 노령연금 일부 감액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 제2항·제4항,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 ----- ----- ----- ----- ----- ----- ----- ----- ----- ----- ----- -----.
1.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	<삭 제>

현행	개정안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 초과소득월액의 1천분의 50 2. ~ 5. (생략)	1. ~ 4.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상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²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노령연금액에서 우선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연 단위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²¹⁾을 감액하고,

소득액이 A값(전체가입자의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

20)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1) 「국민연금법」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①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유지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5.1.28.>

1. 배우자:연 15만원

2.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연 10만원

3.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연 1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③ ~ ⑤ (생략)

금액, 2021년 기준 253만원)을 100만원 미만 초과하는 경우, 해당하는 초과 부분 금액(이하 “초과소득월액”)의 5%를 감액(최대 5만원)하며,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더 커질수록 더 높은 비율의 노령연금금액이 감액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 개정안은 소득 발생으로 인한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초과소득월액의 5%(최대 5만원)를 감액하였던 것을 폐지하고,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 발생에 따른 노령연금금액 감액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소득구간별 노령연금금액 감액 >

초과소득월액	현행		개정안	
	노령연금 감액	부양가족 연금	노령연금 감액	부양가족 연금
100만원 미만	△0~5만원	감액	감액 폐지	감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15만원		△5~15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30만원		△15~30만원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50만원		△30~50만원	
40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 현행법에서 초과소득월액에 대해서 구간별로 누진적으로 노령연금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고소득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다 보장을 제한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두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2021년 기준으로 월소득이

253만원에서 353만원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대상자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을 더 두텁게 해주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 입법은 2022년 시행 기준 131억원, 5년간 878억원에 해당하는 추가재정소요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계되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안 제63조의2)	131	154	181	202	210	878	17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 다만, 체계·자구상의 문제로서 개정안과 같이 제63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는 경우, 동 호에 포함되어 있는 “초과소득월액”에 대한 약칭, 즉,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의 내용이 같이 삭제되기 때문에 이를 다음 호에 추가하는 보완이 필요함.

다. 보건복지부 의견: 수정 수용

- A값(전체가입자의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2021년 기준 253만원)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인 감액대상자가 전체의 절반 정도 차지하면서 감액규모는 약 7% 수준임.
-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가 높으며, 실제 소득이 높지 않고, 재정 소요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에 동의함.
- 다만, 현행 A값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소득 비례 감액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서 부양가족연금을 감액하는 현행 제도도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 필요

< 소득구간별 노령연금액 감액 >

초과소득월액	현행		개정안		복지부 의견	
	노령연금 감액	부양가족 연금	노령연금 감액	부양가족 연금	노령연금 감액	부양가족 연금
100만원 미만	△0~5만원	감액	감액 폐지	감액	감액 폐지	감액 폐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 15만원		△5~ 15만원		△5~ 15만원	감액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 30만원		△15~ 30만원		△15~ 30만원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 50만원		△30~ 50만원		△30~ 50만원	
40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 참고로 부양가족연금액은 연 단위로 지급하며 2021년 기준 배우자에 대해서는 263,060원,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에 대해서는 175,330원,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에 대해서는 175,330원 등을 사유별로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8. 연금보험료 징수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기동민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세청 소속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수탁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도록 하여 사회보험료 징세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滯納月)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는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다. ④ (생략)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세청장이----- ----- ----- ----- ----- ----- ----- -----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국세청장에게-----.
제17조의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① (생략)	제17조의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라 충당한 후에도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초 연금 지급월에 반환한다.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99조에도 불구하고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을 납부받아 해당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생략)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①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追納保險料) 또는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③ (생략) 제57조(급여의 환수) ①·② (생략) ③ 공단은 환수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며,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	② ----- ----- ----- ----- -----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도----- ----- -----. ③ (현행과 같음)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① ----- ----- ----- 또는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7조(급여의 환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징수공단-----

현행	개정안
으로, “연금보험료”는 “환수금”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생략)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① 공단은 제57조에 따라 환수금등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등의 금액 및 납부 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의 고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그 도달에 관하여는 <u>제88조의2제3항을</u> 준용한다. ② (생략)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과 관련하여서는 <u>제95조제6항·제7항을</u> 준용하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제87조(국고 부담) 국가는 매년 공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① ----- ----- ----- ----- -----. ----- ----- ----- ----- -----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을-----.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제5항을-----징수공단----- -----. 제87조(국고 부담) -----단

현행	개정안
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 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신 설> <신 설>	음 각 호의 자가----- ----- ----- -----. 1. 공단 2. 제88조 및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하 “징수공단”이라 한다)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③ ~ ⑤ (생략)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제88조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납부 의무자에게 연금보험료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제4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 ----- ----- ----- 국세청장에게-----. ② ----- ----- -----국세청장이-----. ③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	개정안
<u>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기간 동안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u> <u>② 건강보험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u>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하거나 납부 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납부 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u> <u>④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u> <u>⑤ 건강보험공단은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입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인 사용자 및 사업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납입의 고지 방법, 고</u>	

현행	개정안
<u>지의 도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u> <u>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u> <u>① 연금보험료는 납부 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 연금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다.</u> <u>② 연금보험료를 납부 기한의 1개월 이전에 미리 낸 경우에는 그 전달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이 속하는 날의 다음 날에 낸 것으로 본다.</u> <u>③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경우 그 기간과 감액(減額)할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④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u> <u>⑤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지서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 범위에서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 <u>⑥ 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u> <u>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지원받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u> <u>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은 공제계산서로 본다.</u> <u>③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u>	<u><삭 제></u>

[illegible]

현행	개정안
<u>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u> 1. <u>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9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u> 2. <u>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u> 3.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다.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② <u>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③ <u>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u>	

현행	개정안
<u>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④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u> <u>⑤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추후 납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u> <u>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94조(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u> <u>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납기(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전이라도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u> <u>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이 체납되어 체납처분을 받은 때</u> <u>2. 강제집행을 받은 때</u> <u>3. 파산 선고를 받은 때</u> <u>4. 경매가 개시된 때</u> <u>5. 법인이 해산한 때</u> <u>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지 내지 아니하거나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u> <u>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u> <u>③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내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u> <u>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금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u> <u>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⑥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u>	

현행	개정안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매각은 건강보험공단인 것으로 본다. ⑦ 건강보험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①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 의무자”라 한다)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납부 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삭 제>

현행	개정안
<u>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u> <u>서 또는 공공기관은 납부 의무자</u> <u>의 동의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u> <u>조회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여</u> <u>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u> <u>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u> <u>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u> ① <u>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를</u> <u>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u> <u>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u> <u>바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할</u> <u>수 있다.</u> ② <u>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를</u> <u>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u> <u>대하여 제95조제4항에 따른 체납</u> <u>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u> <u>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u> <u>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u> <u>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u> <u>·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u> <u>여야 한다.</u> ③ <u>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u> <u>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u> <u>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u> <u>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u> <u>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u> ④ <u>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u> <u>한 절차·방법·기준 등에 필요</u> <u>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u> <u>한다.</u>	<삭 제>

현행	개정안
제95조의4(체납자료의 제공) 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사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가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96조(서류의 송달) 제57조의2, 제88조의2 및 제95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삭 제>

현행	개정안
<u>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u>제97조(연체금) ①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u> <u>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u>	<u><삭 제></u>

현행	개정안
수 있다 제97조의2(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항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사업장가입자에 한한다)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사용자의 인적사항을 말한다) 및 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연금보험료등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액의 납부 이행 등을 고려하	<삭 제>

현행	개정안
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인적사항등의 공개와 관련한 납부능력의 기준, 체납액의 납부 이행, 공개절차 및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는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같은 순위로 한다. 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을 징수할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2. 본인이 노령연금을 받거나 제77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때 3. 제115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10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① 공단은 연금보험료, 연체금,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u>체납처분비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공단은 이를 반환결정하여야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과오납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u> 제102조의2(건강보험공단에 출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에서 <u>건강보험공단에</u>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금의 규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u>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경우 제45조를 준용한다.</u> 제108조(심사청구) ①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u>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u>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02조의2(<u>징수공단에</u> 출연) ① -- ----- ----- ----- -----<u>징수</u> <u>공단에</u>-----. ----- ----- -----. ② <u>징수공단은</u>----- ----- -----. 제108조(심사청구) ① ----- ----- ----- -----<u>공단의</u>----- -----

현행	개정안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공단에-----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9조(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①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건강보험공단에 징수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09조(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① ----- ----- ----- ----- 둔다.
② 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 -----.
제115조(시효) ①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 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115조(시효) ① 환수금을 징수할----- ----- ----- ----- ----- -받을-----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제57조의2제2항 및 제95조제1항	<삭 제>

현행	개정안
<u>에 따른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u> ④ 제3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 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이나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8조(연금원부) ① (생략)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징수권 소멸 상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하고, 그 명세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8조(벌칙)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8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제90조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	<삭제> ⑤ -----지급에----- ----- ----- -----. 제118조(연금원부)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제128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 -----한-----

현행	개정안
<u>금을 공제할 때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u> 2. 제95조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 <u>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u> 3. 4. (생략)	<삭제> 3. 4.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현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보험료의 징수 및 고지·독촉·채납처분 등에 관한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²²⁾이 일괄하여 수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세 징수를 위한 소득·재산 등 파악과 사회보험의 수급권 판단 및 보험료 징수를 위한 소득·재산 파악이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후적으로만 국세행정자료와 건강보험 DB를 연동하여 정책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국세징수행정의 집행력, 강제력 및 축적된 과세자료 등을 보험료 징수에 활용하고, 국세 정보 및 사회보험료 가입 정보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사회보험료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국세 징수는 우리 헌법상 납세 의무²²⁾에 따른 것인 반면, 사회보험료 징수는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²³⁾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22) 「대한민국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23) 「대한민국헌법」 제34조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세는 국가가 재정권에 의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수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사회보험 수급의 대가로서 비용을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와는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고,

「정부조직법」²⁴⁾상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법체계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고 조세행정과 사회보험행정을 연계·활용하려는 내용을 담은 제정법안(「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111345호)이 발의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에는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4) 「정부조직법」 제27조(기획재정부) ④ 국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의견: 신중 검토

-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를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별도로 설립하여 동 공단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취지, 비용효과성, 제도의 안정적 운영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	개정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 ----- -----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나. 검토의견

- 2018년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²⁵⁾을 내렸고, 이에 대응하여 국회는 2019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 이에 따라 2020년부터 대체역의 편입 및 소집이 시작되었으며, 2020년 중에 총 836명이 대체역으로 편입 또는 소집되었음.

< 2020년 대체역 편입 및 소집 현황 >

구분	합계	편입				소집
		소계	현역	보충역	예비군	
인원 수(명)	836	730	702	27	1	106

주: 편입은 이미 현역·보충역 및 예비군 등의 복무의무가 부과된 사람을 대체역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말하고, 소집은 복무의무가 아직 부과되지 않은 복무의무자를 대체역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함(「병역법」 제2조제2호 참조).

자료: 병무청, 2020 병무통계연보

- 동 법을 제정하면서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별정우체국 연금의 재직기간 계산 시 임용 전의 대체역 복무를 포함시키도록 부칙을 통해 타법개정을 하면서도²⁶⁾, 국민연금 및 군인연금의 군

25) 전원재판부 2011헌바379, 2018. 6. 28.,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26) 부칙 <제16851호, 2019.12.31.>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1호 중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을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으로 한다.

③~⑥ (생략)

⑦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상근 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⑧ (생략)

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을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으로 한다.

복무기간의 산입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법령 정비를 하지 않았음.

- 이는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별정우체국 연금의 경우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보충역 전체에 대해서 재직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 외의 다른 보충역 복무에 대해서는 가입기간 및 복무기간 추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규정 태도에 따른 것이었음.

< 보충역 및 대체역 복무에 대한 주요 연금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현황 >

연금 복무 형태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산입	산입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불산입	산입
대체역		불산입	산입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대체역 복무에 대해 국민연금 추가 가입기간 산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인정되지 않는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등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균형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다. 보건복지부 의견: 수정 수용

- 대체역에 편입되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대체복무요원은 현역병과 복무형태나 소득 활동의 제약 정도가 유사하여 군복무 크레딧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
- 다만,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및 복무기간 등은 「병역법」이 아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안 제18조제1항 단서 규정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추가 필요

10. 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투자 의무화(이낙연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민연금 관리·운용의 목표를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 유지”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변경하고,

증권 투자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왔던 환경·사회·지배구조(ESG)²⁷⁾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며,

ESG 요소를 고려해야 할 투자를 증권 투자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²⁸⁾ 및 선물 등 파생상품거래²⁹⁾로 확대하고,

ESG 투자에 관한 기금운용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생략)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 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② -----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 -----

27)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ESG)는 기업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말함.

28)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29)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현행	개정안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1. ~ 7.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u>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u>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 -----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1호와 제3호 및 제4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 ----- ----- ----- ----- -----

현행	개정안
1. ~ 5. (생략) <신설>	1. ~ 5. (현행과 같음) 6. 제102조제4항에 따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 고려에 관한 기준 및 방법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Social·Governance, ESG) 투자란 재무적 요인 외에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와 같은 비재무적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성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 방법론을 말함.
- 현재 EU³⁰⁾, 미국³¹⁾ 등 세계 각국에서는 ESG에 관한 경영 공시 의무화가 이루어지는 등 ESG 제도화 및 생태계 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경영 및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음.
- ESG 투자와 관련하여 UN에서는 2005년 ‘6가지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PRI)’³²⁾을 천명했고, 2021년 현재 3,826개 기관투자자(운용자산 총

30) '18.3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 '19.12 EU 그린딜(Green Deal) 전략, 금융투자 상품의 ESG 공시 의무에 관한 '19.12 지속가능금융공시 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기업의 ESG 공시의무에 관한 '21.4 기업지속가능성보고 디렉티브(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제정, 탄소중립 목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21.6 유럽기후법 개정 등

31) 기업지배구조 규제에 관한 '10년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아동노동·강제노동 관련 규제 및 공시의무에 관한 '10년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법(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 ESG 공시 단순화법(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 논의 중

121.3조 달러)가 참여하여 ESG 투자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국민연금은 2009년 UN PRI에 서명하였고, 당시 서명 기관은 523개

□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국내주식 일부³³⁾에 대해 ESG 투자 전략³⁴⁾을 적용하고,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투자 기업과의 ESG에 관한 협의 등을 수행하고 있음.

□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기업 ESG 평가기준 마련('15), 국내주식 운용(액티브)에 ESG 적용('17),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19), 국내채권 운용으로 ESG 확대 계획('21.5) 등 ESG 투자를 확대하여 왔으나,

국민연금이 투자를 결정할 때 고려할 ESG 관련 정보를 충분히 입수하지 못하고 있고, 석탄, 무기, 도박 등 최악주, 반인권 기업·국가 등에 대한 투자 배제가 미흡하다는 국회에서의 지적이 있었고,³⁵⁾

ESG 전략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적용 범위의 제한 등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었음.³⁶⁾

□ 이에 공적 연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있어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가운데 수익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32) UN의 6가지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1. 우리는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 과정에 ESG 이슈를 적극 반영한다.
2. 우리는 투자철학 및 운용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자가 된다.
3. 우리는 투자대상기업에게 ESG 이슈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4. 우리는 금융산업의 PRI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투자의 이행에 있어서 그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6. 우리는 PRI의 이행에 대한 세부 활동과 진행사항을 보고한다.

33) 2020년말 기준 총 국내주식 투자 176.7조원 중 101.4조원(57.4%)에 ESG 적용

34) 기업의 가치 및 위험 분석에 재무 정보를 통합하는 'ESG-통합' 전략과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을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하는 '네거티브 선별' 전략을 활용하고 있음.

35)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36) 자본시장연구원. (2021). 공적연기금 ESG 투자의 현황과 과제.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 다음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ESG에 대한 강행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수익성보다 공익성이 우선이 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돈이고 국민연금 기금은 위탁·관리주체로서 확정급여 방식의 연금제도 유지를 위해서 적립금에 대한 수익 활동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현행법상 국민연금 기금운용 목표인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에 비하여 개정안의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의미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셋째, 투자의 현실적 여건에서는 ESG 투자를 모든 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 등에 의무화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제약할 수 있고, 아직까지 ESG 관련 정보의 산출 및 공시를 위한 준비가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 등이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 기관 의견

1) 보건복지부: 신중 검토

- 연금 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목적에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국민연금 제도 또는 기금의 지속가능성은 기금의 관리·운용만으로 확보할 수 없으며,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는 여러 방면에서 다의적 의

미로 사용되고 있어, 의미가 불분명함.

- 제104조제4항의 개정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나,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행위가 장기적 수익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은 있으나, 이를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한편, 현행 「기금운용지침」에서는 제4조(기금운용원칙)에서 ‘지속가능성의 원칙(5호)’³⁷⁾을 규정하고 있고, ESG 관련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책임투자 기준, 절차, 방법 등은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³⁸⁾에 규정하고 있음.

37)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4조(기금운용 원칙)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한다.

1. 수익성의 원칙 :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2. 안정성의 원칙 :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3. 공공성의 원칙 :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기금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4. 유동성의 원칙 : 연금급여의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국내금융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5. 지속가능성의 원칙 :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6. 운용 독립성의 원칙 : 상기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38)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3조(기본원칙) ④ 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

제6조(대상) ① 기금은 투자대상 주식 및 채권에 대해 투자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고려는 직접운용 및 위

2) 경제계 공동 의견³⁹⁾: 신중 검토

-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기금 관리·운용만으로 달성될 수 없고, 개념상 기금 관리·운용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며, 기금 운용의 수익성을 벗어난 개념으로 확대 또는 확장 해석될 우려가 있음.
- 여러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기업에 대한 ESG 경영의 경우와 다르게 국민연금의 이해관계자는 오로지 국민이므로 수익 최대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갖는 것이 타당하며, 해외 주요 연기금 근거 법률 등에서도 운용 수익 최대화 이외의 목표를 규정하는 전례가 없음⁴⁰⁾.
- 지속가능성 및 ESG를 근거로 한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외부 영향력 개입 및 운용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됨.

탁운용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제7조(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 기금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에 관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 재무성과와 연관성 등을 고려하고, 변경내용 등은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고려 방식)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 고려는 자산군별·운용방식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39)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40) 캐나다 연금(CPP) 연금투자이사회법(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act §5 (b) ©)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정부연기금법(Lov om statens pensjonsfond §2)

일본 공적연금(GPIF): 후생연금보험법 제79조의2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 주헌법(California Constitution Article XVI, section 17)

네덜란드 교직원 및 공무원 연금(ABP): 투자원칙(Statement on the investment principle I.3)

[참고]	국민연금기금 운용 현황(2020년말 기준)
-------------	--------------------------------

□ 조성 및 운용

- 2020년말 현재 연금보험료 등으로 1,068.5조원 조성, 연금급여 등으로 234.8조원 지출하고 나머지 833.7조원을 대부분 금융자산에 투자

조 성 1,068.5조원	지 출 234.8조원	기금적립금 833.7조원
628.9(연금보험료 등*)	225.4(연금급여)	833.1(금융부문)
439.6(운용수익금)	9.4(관리운영비 등)	0.6(복지·기타)

* 연금보험료(627.6조원) + 임대보증금 등(1.3조원)

** 모든 수치가 각각 반올림되어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포트폴리오 현황

(시가 기준, 단위 : 억원, %, %포인트)

구 분	2020년 말(A)		2019년 말(B)		증감(A-B)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계	8,337,276	100.0	7,366,538	100.0	970,738	0.0
금융부문	8,331,384	99.9	7,360,790	99.9	970,594	0.0
주 식	3,694,474	44.3	2,987,885	40.6	706,589	3.7
(국 내)	1,766,957	21.2	1,322,609	18.0	444,348	3.2
(해 외)	1,927,517	23.1	1,665,277	22.6	262,241	0.5
채 권	3,709,820	44.5	3,512,134	47.7	197,685	-3.2
(국 내)	3,260,993	39.1	3,207,512	43.5	53,481	-4.4
(해 외)	448,827	5.4	304,622	4.1	144,205	1.3
대체투자	906,596	10.9	842,952	11.4	63,644	-0.5
(국 내)	247,153	3.0	247,971	3.4	-818	-0.4
(해 외)	659,443	7.9	594,981	8.1	64,462	-0.2
단기자금	20,493	0.2	17,819	0.2	2,675	0.0
복지부문¹⁾	1,800	0.02	1,663	0.02	137	0.0
기타부문²⁾	4,092	0.0	4,085	0.1	7	-0.1

주1) 복지부문 : 복지타운(청풍리조트), 신용회복지원자금, 노후긴급자금(국민연금실버론)

2) 기타부문 : 공단사옥운영, 기금보관금

[참고]

국민연금법 제102조제2항 제1호 · 제3호 · 제4호에 따른 운용의 해설

자료: 보건복지부

○ 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 예입은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된 자금이 회수되어 다음 투자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일시적으로 은행 등에 맡기는 **단기자금**에 해당
- 신탁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루어지는 경우 「신탁법」 상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른 자금을 신탁하게 될 것임.

○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 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
- 공단은 **국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해외주식 대여거래** 수행 (‘18년 이후 국내주식 대여 거래는 안 함)

○ 제4호 “자본시장법 제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지수 등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 거래권 부여, 교환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선물 등)
- 공단은 포트폴리오와 벤치마크 간 괴리를 축소하는 목적(‘벤치마크 추종목적 거래’)으로 **주가지수선물(코스피200 등)**을 거래 중이며, 포지션 한도를 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증권과 파생상품은 ‘원금 이상의 손실가능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증권은 최대 손실이 원금이 0원이 되는 것이고, 파생상품은 (-)의 수익률이 가능

11.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추납 인정 확대(최연숙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현재 18세 미만 근로자가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 경우⁴¹⁾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도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면 해당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u><신설></u> 1. (생략)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 ----- ----- ----- ----- ----- 1. 18세 미만 근로자가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41)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생략)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현행	개정안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서는 전업주부·기초수급 및 행방불명 등의 사유에 따른 지역가입자 적용제외 기간⁴²⁾과 실직, 병역의무,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납부예외 기간⁴³⁾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사후에 납부하고 가입자가 해당 가입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두고 있음.⁴⁴⁾

42) 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 2. 6., 2015.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 다. 삭제 <2016. 5. 29.>
 -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2.·3. (생략)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이 경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3)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4)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2020. 12. 29.>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9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2.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3.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 추납 제도의 실익은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미달에 따른 수급 탈락을 방지하여 연금수급권을 넓게 인정하는 것임.

□ 연금수급권의 넓은 인정과 사각지대 방지를 위하여 추가 납부를 할 수 있는 사유는 확대되는 추세이며, 2016년에는 경력단절로 인해 수급권을 널리 인정받지 못하는 전업주부에 대한 추납을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있었음.

□ 현재 추납 허용 기간 중에는 이미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대학 진학 및 무소득 배우자 기간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된 경우를 추가납부의 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기존 제도와 이질적이지 않으며,

특히 18세 미만 근로자는 저학력·저경력 상태로서 경제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연금 가입 제외 신청이 공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개연성도 있는 등 추납 대상으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개정안에 따라 추가적으로 추납 대상이 되는 사람은 최근 5년간 약 600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18세 미만 근로자 중 개정안 적용 대상자 현황(최근 5년간) >

(단위: 명,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사람	175	118	130	110	64

주: 연도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다.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② ~ ⑥ (생략)

다. 보건복지부 의견 : 수용

☐ 18세 미만 근로자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에 동의

☐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금가입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보험료 최초 납부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8세 미만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향후 연금수급권 확보에 긍정적 효과 기대

문 의 처
02)6788-5503